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관리주체의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91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금관리주체의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안 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소희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 9.

다. 회 부 일 : 2025.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금관리주체의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안 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u><후단 신설></u>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현행과 같음> - <u>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u>

개정안은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주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임.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회계·기금별 구분 없이 각 중앙관서별로 작성되고 있으며, 예산(기금) 소관과 사업 추진주체가 이원화된 경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해당 부처의 성과계획에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부처가 사용하는 기금의 경우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기후대응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임무와 비전에는 기후대응과 관련한 내용이 부재하며 기후대응 기금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목표는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등 각 사업부처에 혼재하고 있는 상황임.

[기획재정부 성과계획 목표 체계도]



[기후대응기금 사업 관련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	기재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재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순환이용 을 확대한다.	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의 녹색전환을 촉진한다.	환경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환경부)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저탄소·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 한다	산업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기술개발을 통한 안정적 자원수 급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산업부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제조기술 개발(R&D)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적 극 추진한다.	산업부	탄소중립전환선도 프로젝트유자지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 한다.	산업부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산업부)
탄소중립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 계를 마련한다.	과기부	탄소자원화기술고도화(R&D)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R&D)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5년 성과계획서 재구성

이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등 사업이 다부처에 혼재되어있는 기금(이하 ‘다부처 기금’)의 경우 기금 자체의 종합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금 개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작성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모두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

또한, 개별 부처의 전략목표와 프로그램 목표에 다부처 기금 사업을 배치함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성과지표의 성격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일례로 기후대응기금의 해양해운목표관리제(해양수산부 수행)는 프로그램 목표 ‘해양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에 포함되어 있으나, 해양해운목표관리제는 국내 해운·해양 산업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해양안전증진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음.

개정안에 따라 다부처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가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부처 기금 사업의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업의 집행성과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심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기금 내 사업간 프로그램 목표 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여 사업 성과의 객관적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기금별 상이한 사업수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타부처 수행사업이 있는 모든 기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등 성과관리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

전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임무와 비전을 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본인의 임무와 비전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주체가 설정한 임무와 비전을 함께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해 목표 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금관리주체가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재정사업 성과목표 등을 설정할 경우 각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성과목표에 대한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 ·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 <u>단 신설</u> >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 ----- ----- ----- ----- ----- ----- ----- ----- . 이 경 우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 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1